

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. 9. 12 선고 2017가단1836 판결 [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]

전 문

원고A

피고B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17. 9. 12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115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. 6. 22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무변론판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

판사장두영

별지